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. 4. 24 선고 2017나128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. 4. 24 선고 2017나1285 판결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. 8. 30 선고 2016가단3085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1. B

2. C

변론 종결2018. 4. 10.

판결 선고2018. 4. 24.

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. 8. 30. 선고 2016가단3085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심판결의 주문 제1.의 나.항 중 "제1. 가.2)항"을 "제1. 가.1)항"으로 경정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주위적으로 원고에게, 피고 B은, 강릉시 D 대 1,564m² 가운데 별지 도면 1, 2, 3, 4, 5, 6, 7, 8,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(ㄱ) 부분 57m² 위에 있는 주택과 같은 도면 11, 10, 9, 6, 5, 4, 11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(ㄴ) 부분 61m² 위에 있는 창고를 각 철거하고, 위 대지 1,564m²를 인도하고, 60만 원과 2016. 5. 1.부터 위 대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연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피고 C은 위 (ㄱ) 부분 위에 있는 주택, 위 (ㄴ) 부분 위에 있는 창고에서 퇴거하라.

나. 예비적으로 원고에게,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5,736,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강릉시 D 대 1,564m² 가운데 별지 도면 1, 2, 3, 4, 5, 6, 7, 8,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(ㄱ) 부분 57m² 위에 있는 주택과 같은 도면 11, 10, 9, 6, 5, 4, 11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(ㄴ) 부분 61m² 위에 있는 창고를 인도하고, 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. 5. 1.부터 위 대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연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피고 C은 위 (ㄱ) 부분 위에 있는 주택, 위 (ㄴ) 부분 위에 있는 창고에서 퇴거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, 제1심판결의 주문

제1.의 나.항 중 "제1. 가.2)항"은 "제1. 가.1)항"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,
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정곤

판사이하림

판사윤영수

별지